

韓國의 海外投資制度와 實績

趙 東 成* · 金 炳 淳**

.....〈目 次〉.....

- I. 序 言
- II. 韓國의 海外投資制度
- III. 韓國의 海外投資實績
- IV. 結 言

I. 序 言

海外投資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長期資本의 國際間 移動의 한 形態로서 外國의 實物資產, 株式 等を 取得하거나 資金을 貸付하는 行爲를 意味한다.

海外投資는 貸主의 性格에 따라 民間投資와 公共投資, 投資期間의 長短에 따라 短期投資와 長期投資, 所有와 經營參與目的에 따라 直接投資(overseas direct investment), 間接投資(portfolio investment) 및 非資本參與(non-equity participation) 等으로 分類된다. 그러나 이러한 分類는 必要에 따른 便宜의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各國의 經濟環境이나 實定法에 따라 海外投資의 分類는 差異가 있다.

이와 같은 海外投資는 지난 30餘年間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年 인도네시아 森林開發投資가 그 嚆矢이다.

우리의 國內市場이 狹小하고 賦存資源이 貧弱한 現狀況에서 商品輸出市場의 擴大와 資源의 安定供給體制構築을 위한 手段으로 企業의 海外進出 특히 海外投資의 必要性은 增大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海外投資에 대한 우리의 現制度와 그 간의 實績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韓國의 海外投資制度

1. 許可制度

(1) 海外投資의 範圍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學科 助教授

**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碩士

우리나라의 海外投資範圍는 外國換管理規程에서 ① 投資比率이 50% 以上인 證券의 取得 또는 應募, ② 償還期間이 1年 以上인 貸付, ③ 不動產取得, ④ 契約期間 또는 代價의 領收期間이 1年 以上인 技術用役의 提供, ⑤ 輸出物品代金の 引渡 또는 船積後 決濟期間이 3年을 超過하는 延拂輸出 等 5가지로 區分하고 있어, 直接投資와 間接投資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고 또한 延拂輸出과 技術用役提供단의 進出도 海外投資에 包含시키고 있어, 海外投資를 他國에 比해 廣範圍하게 規定하고 있다.

以下 外國換管理規程에서 規定하고 있는 海外投資範圍 중 證券投資, 貸付 및 不動產取得 等 海外直接投資形態단을 現行制度를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① 證券投資

現地法人에 대한 投資資金의 代價로서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는 것으로 가장 一般的인 投資形態이다. 證券取得에는 出資比率에 따라 100% 全額出資인 「單獨投資方式」과 投資國側과 相對國側이 各各 出資하는 「合作方式」(joint venture)이 있다. 合作方式에는 契約的 合作投資와 所有合作投資의 形態가 있다.

證券投資의 경우 取得證券은 設立新株, 增資新株 또는 既存法人의 株式讓渡에 의한 舊株 取得이 一般的 形態이며 證券의 取得代價는 現金, 現物 및 勞務出資 等이다.

② 貸付

貸付投資는 海外企業에 대하여 設備資金 또는 運轉資金의 貸付를 目的으로 하는 投資로서, 우리나라는 償還期間이 1年 以上인 경우만을 貸付投資로 하고 있다.

貸付投資는 投資對象國의 關係法規에 의하여 證券取得이 禁止 또는 制限되는 경우에 證券投資에 代身하는 投資方法으로 이 경우 原則적으로 投資對象國 또는 國際적으로 公信力이 있는 銀行의 支給保證이 添附됨으로써 元利金回收가 確實하다는 利點이 있으나, 償還이 完了된 以後에는 兩側間의 經濟的 紐帶關係도 끝나게 되므로 長期的인 提携를 目的으로 할 때에는 바람직한 投資形態가 아니다.

그러나 開發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長期投資에 있어서는 證券投資와 貸付投資가 併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資本金에로의 出資를 回避함으로써 投資對象國의 抵抗을 惹起하지 않고, 現地法人에 대한 貸付를 通하여 그 現地法人이 鑛業權, 伐採權, 漁業權 等 開發輸入에 必要한 諸權利를 容易하게 取得할 수 있다는 點에서 直接投資의 特殊한 方式이라 하겠다.

③ 不動產取得

不動產 또는 이에 관한 權利를 取得하기 위한 投資로 非營利公益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活用計劃의 妥當性이 있어야 한다.

(2) 海外直接投資의 要件 및 節次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許可業務는 外國換管理法 第21條내지 第30條 및 同法施行令 第32條내지 第37條에 依據 財務部 長官의 許可事項으로 財務部에서 管掌하여 왔으나, 1975년 4월에 이에 관한 權限이 韓國銀行에 委任되어 現在 外國換管理規程 第15章에 依據 韓國銀行에서 이를 取扱하고 있으며,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重要政策 및 細部施行方案과 海外投資事業의 適正性 與否에 대한 審議 等은 財務部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延拂輸出 및 投資分野實務委員會」⁽¹⁾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政策審議와 許可 및 事後管理를 政府 및 中央銀行에서 遂行하고 있는 것은,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資本의 移動과 그 效果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므로, 個別企業의 無分別한 投資에 따라 發生할 수 있는 海外에서의 資本損失을 極小化하고 輸出增大, 資源確保 等 個別企業의 利益과 國家經濟에 이마지할 수 있는 選別投資를 誘導하고 投資事業의 合理的 運營을 期하려는 데 있다.

현재 外國換管理規程에서 規定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要件과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海外直接投資의 要件

海外直接投資를 하기 위하여는 投資者要件, 投資方法別 要件, 投資業種要件에 모두 適合하여야 한다.

㉠ 投資者要件⁽²⁾

海外直接投資를 하고자 하는 者는 法人의 경우⁽³⁾ 業種에 따라 納入資本金이 20百萬元에서 500百萬元 以上, 個人의 경우에는 投資金額 2倍 以上の 自己資本이 있어야 하고, 當該投資業種에 1年 以上の 經驗이 있어야 하며, 韓國銀行 總裁가 認定하는 適正水準 以上の 企業經營狀態를 維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投資者要件을 制限하는 것은 國內事業基盤이 確固하고 國際的 經營能力을 갖춘 企業을 進出시켜야 成功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 投資方法別 要件⁽⁴⁾

(1) 外國換管理規程 第15-8條.

(2) 外國換管理規程 第15-3條.

(3) 業種別 資本金要件:

- 鑛業, 電氣가스業, 製造業(第1次金屬, 石油化學, 金屬機械 等) 500百萬元 以上.
- 林業, 建設業 300百萬元 以上.
- 貿易業, 水産業, 製造業(纖維, 衣服, 木材家具 等) 200百萬元 以上.
- 運輸保管業, 不動產 및 企業用役業 100百萬元 以上.
- 都小賣業, 서비스業 50百萬元 以上.
- 零細製造業 및 서비스業 20百萬元 以上.

(4) 外國換管理規程 第15-4條.

海外直接投資(證券投資, 貸付 및 不動產取得)의 投資方法別 要件을 살펴보면, 證券投資는 投資比率이 50% 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事實上 經營을 支配할 수 있거나 投資相對國의 法令 또는 政策이 50% 以上の 合作比率을 許容하지 아니하는 경우, 投資相對國의 金融·稅制 等に 비추어 顯著히 不利한 경우, 3個國家 以上の 法人이 合作投資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貸付인 경우에는 利率이 基準金利⁽⁵⁾ 以上이고, 債權의 回收가 確實하여야 하며, 不動產取得은 取得後 生産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活用計劃이 타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投資方法別로 要件을 定한 것은 投資에 따른 危險回避와 投資收益率增大를 위한 것이다.

以上の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後 許可條件에 따라 投資元利息, 配當金 等を 現金 또는 現物로 國內에 回收하여야 하고, 事業이 清算되었을 경우에는 殘餘財産을 即時 國內에 回收하여야 한다.

㊦ 投資業種要件⁽⁶⁾

海外直接投資 중 開發輸入, 輸出市場開拓, 漁場確保 및 國內斜陽産業으로 對外競爭力確保를 위한 投資는 獎勵 支援하며,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上 惡影響을 미치거나 國威를 損傷시키는 事業, 公序良俗에 反하는 事業은 投資를 禁止하고 있다.

이와 같은 制限은 海外直接投資가 企業의 利益에 앞서 國家經濟의 利益을 考慮하여 推進되어야 하며, 短期的 利益追求보다는 長期的 觀點에서 投資事業을 遂行함으로써, 우리 經濟에 必要한 있는 資源의 安定的 供給과 輸出市場基盤을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㉔ 海外直接投資의 節次

海外直接投資許可業務는 韓國銀行에서 取扱하고 있는 바, 投資事業에 따라 韓國銀行의 單獨許可事項과 「海外投資事業 審議委員會」⁽⁷⁾ 審議를 거쳐 韓國銀行에서 許可하는 事項으로 區分된다.

海外直接投資는 短期的으로는 國際收支에 陰의 效果를 가져오므로 投資許可는 우리나라의 外換事情과 國際收支改善에의 寄與度 等이 考慮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側 企業과 合作 파트너에 대한 經營管理側面의 分析이 行하여진 후 許可를 하며, 投資許可後 韓國銀行은 投資者로부터 定期的으로 報告書 및 關係資料를 提出받아 現地法人의 經營實績을 分析

(5) 6個月 滿期 리보 레이트(LIBO rate) 또는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6) 外國換管理規程 第15-5條.

(7) 海外投資事業의 適正性與否, 海外投資業體의 制裁 및 海外投資事業의 成果分析 等を 審議하는 機構로 韓國銀行 副總裁를 委員長으로 하고 關聯機關 委員 8人으로 構成되어 있음.

檢討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投資者에게 運營指針을 示達하거나 其他 必要한 措置를 取하며, 外國換關係法規나 許可條件의 履行與否를 監督하여 海外直接投資의 實效를 期하기 위한 事後管理를 繼續한다.

㉑ 許可機關

海外直接投資의 許可機關은 韓國銀行이나, 韓國銀行이 單獨으로 許可할 수 있는 事項은, 投資金額이 50萬달러 以下の 事業으로 外國換管理規程에서 規定한 海外直接投資要件에 適合하거나 「延拂輸出 및 投資分野 實務委員會」 또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 「海外資源開發審議會」, 「經濟長官協議會」, 「輸出入銀行 運營委員會」에서 支援하기로 決定된 事業에 局限된다.

投資金額이 50萬달러를 超過하거나 海外直接投資要件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海外投資事業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에 韓國銀行에서 許可한다. 또한 不動產取得, 農業投資, 未修交國投資, 海外建設業과 運輸保管業을 除外한 其他 서비스業 및 個人投資도 上記 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에 韓國銀行에서 許可할 수 있다.

㉒ 事後管理

海外投資者는 投資事業의 現況과 經營實績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韓國銀行에 報告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現地公館長의 監督을 받는다.

이와 같은 事後管理는 外貨資產의 逃避를 防止하면서 投資事業을 健實하게 育成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바, 海外投資의 促進과 外貨資產의 效率的 運用을 위해 事前許可制度는 漸次 事後管理制度로 移行되어야 할 것이다.

2. 支援制度

海外直接投資는 事業環境이 다른 第3國에 進出, 長期的인 經營參與를 통하여 投資利潤을 確保하여야 하므로 事前調査, 投資實行, 投資後 經營管理에 있어 國內投資보다 많은 危險과 不確實性이 介在된다.

企業의 海外直接投資決定에 不安要因으로 作用하는 海外直接投資 리스크(risk)는 豫想收入 및 債權回收의 不確實, 投資收益의 送金에 대한 現地政府의 規制, 外國人財產의 國有化等 外國人財產權侵害, 現地政府의 政治經濟의 不安 等이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의 障礙要因을 除去하여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促進하고자 金融, 保險, 稅制面에서 支援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나, 海外直接投資의 歷史가 日淺한 우리나라는 美國, 日本 等の 先進諸國에 비해 支援程度가 極히 微微해 海外直接投資促進에 充分한 誘因을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

海外投資事業에 대한 資金支援業務는 韓國輸出入銀行에서 단 取扱하였으나, 1980년부터 海外鑛物資源開發事業을 促進하기 위해 大韓鑛業振興公社가 海外資源開發基金을 마련 資源開發投資를 側面 支援하고 있다.

(1) 金融支援制度

海外直接投資를 위한 金融支援制度로는 韓國輸出入銀行의 中長期信用供與가 있다. 이에 是 資金用途에 따라 海外投資資金, 海外事業資金, 資源開發支援資金, 技術提供資金이 있는 바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海外投資資金貸付

㉑ 融資對象

海外投資資金의 融資對象은 資源確保, 經濟協力增進, 우리나라 僑民의 經濟的 地位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으로 支援資金의 使用對象은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地法人 設立을 위한 出資資金, 둘째 現地法人 또는 現地人에 대한 貸付投資資金, 셋째 現地政府 또는 現地人에 대하여 國產機資材로 設置된 産業設備을 貸與하기 위한 資金 等이다.⁽⁸⁾

㉒ 融資比率

所要資金總額의 70% 範圍內에서 資金을 支援한다.

㉓ 融資形式

支援資金의 貸付形式은 外貨表示 어음貸付나 證書貸付로 한다.

㉔ 利率

支援資金의 金利는 他外國換銀行의 支給保證이 있으면 리보率+1.96%이며, 支給保證이 없으면 0.5%를 加算한다. 단, 重要物資나 資源確保의 경우 年 8%로 한다.

㉕ 融資期間

金額에 따라 100萬달러 以下는 7年, 100萬달러 超過는 10年 以內이나, 不得已한 경우 20年까지 延長 可能하다.

㉖ 擔保

擔保는 國內 物的擔保를 取得하여 連帶保證人을 세우는 것이 原則이나, 債權回收가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海外投資保險에 付保하고 信用貸出도 可能하다.

② 海外事業資金貸付

㉑ 融資對象

海外事業의 設備의 新設 또는 擴充에 必要한 所要資材의 大部分이 우리나라에서 充當되

(8) 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 第1項 第6號 및 同法施行令 第15條 第1項.

는 海外事業.

㉑ 融資比率

所要資金의 70% 範圍內.

㉒ 融資形式

資金의 貸付形式은 外貨表示 어음貸付나 證書貸付.

㉓ 其他條件

利率, 融資期間, 擔保 等の 條件은 海外投資資金과 同一.

③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付

㉑ 融資對象

主要資源의 開發을 위한 投資 및 海外事業으로서 政府의 開發計劃이 樹立되고 同計劃에 合當한 事業.

㉒ 融資期間

償還期間 20年 以內.

㉓ 融資比率 및 形式

海外投資資金과 同一.

㉔ 其他 條件

政府의 資源開發計劃에 의한 支援方針에 따라 上記 條件을 適用치 않을 수 있음.

④ 技術提供資金貸付

㉑ 融資對象

外國에 技術을 提供하는 國內業者.

㉒ 其他 條件

輸出資金貸出에 準하여 取扱.

以上과 같은 直接的인 國內金融支援 以外에도 國內銀行 等の 支給保證을 擔保로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받은 資金을 海外投資資金으로 活用하는 現地金融方式이 있는 바, 이는 國內資本力이 不足한 우리 經濟의 海外直接投資財源調達에서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

(2) 投資保障支援制度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投資危險을 輕減시키고 나아가 海外直接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海外投資保險制度和 政府間에 相對國投資의 危險防止를 保障하는 投資保險協定締結에 의한 支援制度가 있다.

① 海外投資保險制度

㉑ 保險의 目的

海外投資去來에서 發生하고 通常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困難한 危險으로 因한 財産上의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를 確立하여 海外投資促進을 통한 輸出增大, 國際經濟協力強化를 期하기 위한 것.

㉒ 保險對象投資⁽⁹⁾

海外投資保險의 對象이 되는 海外直接投資는 新規直接投資로서 (i) 外國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의 取得으로 經營參加를 目的으로 한 것. (ii) 海外直接事業에 供하는 不動産, 鑛業權, 工業所有權 等の 取得. (iii) 우리 國民 또는 法人이 實質的으로 經營을 支配하고 있는 外國法人의 社債取得 또는 當該 外國法人에 對한 長期貸付債權의 取得. (iv) 우리 國民 또는 法人과의 合作 파트너에 對한 當該 合作企業에의 出資用資金의 長期貸付로 우리 側의 經營參加가 可能한 경우.

㉓ 擔保危險⁽¹⁰⁾

海外投資保險이 擔保하는 危險은 國有化, 戰爭, 送金停止 等の 政治的 危險 즉 非常危險에 限하며 經營의 失敗, 換危險, 天災地變 等은 擔保하지 않는다. 이 非常危險은 (i) 收用危險—株式·貸付債權·社債 等の 元金이나 配當金支給請求權 또는 海外直接事業을 爲해 取得한 不動産 等 固定資産에 關한 權利를 外國政府가 沒收하거나 收用하는 경우로서 國有化 또는 株式의 強制讓渡 等. (ii) 戰爭危險—投資企業이 戰爭·革命·內亂·暴動 等으로 損害를 입거나 不動産 및 이에 關한 權利가 外國政府의 措置에 의해 侵害당하는 경우. (iii) 送金不能危險—元金 또는 利益金의 本國送金이 不可能하게 된 경우.

㉔ 保險期間⁽¹¹⁾

海外投資保險의 保險期間은 原則上 15年.

㉕ 保險料率

基本料率이 保險金額의 0.55%이며 國別로 割増料率適用.

㉖ 保險金支給率⁽¹²⁾

保險金은 損失이 發生한 後 損失額의 90% 以內에서 支給.

② 投資保障協定

海外直接投資에는 投資相對國의 經營活動에 對한 規制, 政治經濟的 不安, 外換統制 等

(9) 輸出保險法 第29條의 2.

(10) 輸出保險法 第29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8條의 7.

(11) 輸出保險法 施行令 第8條의 4.

(12) 輸出保險法 施行令 第8條의 5.

果實送金の 制約, 投資資産의 沒收과 같은 諸般危險이 따르는 바, 이러한 危險의 防止를 投資相對國으로부터 保障받음으로써 海外直接投資의 與件을 造成, 企業의 海外進出을 誘導 促進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投資保障協定을 締結하여 兩國間 投資資産을 保護하기로 한 나라는 1960年에 同協定을 締結한 美國을 始初로 10個國⁽¹³⁾에 이르고 있다.

(3) 稅制上支援制度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制度에는 法人稅法과 所得稅法이 共通으로 認定하고 있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和 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 租稅減免規制法上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各種 惠澤, 投資相對國政府와 二重課稅防止協定을 締結하여 同一한 所得에 대하여는 協定에 따라 어느 一方에서만 課稅하는 方法 등으로 支援하고 있다.

①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¹⁴⁾

1973年 稅制改革을 通하여 外貨稼得事業에 대한 稅制支援이 間接支援方式 爲主로 轉換된 에 따라 輸出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制와 同時에 新設되었는 바, 法人稅法과 所得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海外直接投資者가 投資로 因한 損失의 補填에 充當하기 위하여 海外投資損失準備金を 損金(또는 必要經費)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 現在의 海外投資額의 10%(資源開發 20%) 範圍內에서 損金算入(또는 必要經費計上)할 수 있으며 이렇게 損金(또는 必要經費)에 算入한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은 實際 損失이 發生하지 않을 경우 損金(또는 必要經費)計上年度 終了日 以後 3年이 되는 달이 屬하는 事業年度부터 益金(또는 總收入金)에 加算하여 法人稅와 所得稅를 納付한다. 今後 同制度는 稅法 改正에 따라 法人稅法에서 削除되고 規定될 展望이다.⁽¹⁵⁾

② 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¹⁶⁾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果實等 海外收取要素所得에 대하여 外國에서 納付한 稅額을 稅額에서 控除함으로써 同一稅源에 대한 國際的 二重課稅의 防止를 期하여 海外直接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措置로 法人稅法과 所得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海外直接投資者가 外國에서 外國法人稅(또는 外國所得稅額)를 納付하고 그 稅額에 相當하는 國外源泉所得이 當該事業年度の 課稅標準金額에 算入되어 있을 때 「當該 事業年度の

(13) 投資保障協定 締結國家: 美國, 西獨,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튀니지아, 英國, 프랑스, 스리랑카.

(14) 法人稅法 第12條의 5 및 所得稅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70條.

(15)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案 第29條.

(16) 法人稅法 第24條의 3 및 所得稅法 第76條, 同法施行令 第128條.

法人稅額 × 當該年度의 國外源泉所得 / 當該年度의 課稅標準金額」(또는 所得別 算出稅額 × 所得別 國外源泉所得 / 所得別 所得金額)의 範圍內에서 外國納付法人稅(또는 國外源泉所得)을 稅額에서 控除한다.

③ 二重課稅防止協定

海外直接投資와 關聯된 海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投資國과 投資相對國이 모두 稅金을 賦課하게 되면 國際的인 二重課稅現象을 發生시켜 海外直接投資는 國內投資보다 不利하게 되고 投資意慾은 喪失된다. 따라서 이러한 不平을 解消하고 海外直接投資의 沮害要因을 除去하기 위한 方法으로 二重課稅防止協定이 締結되어 진다.

우리나라는 日本을 始初로 二重課稅防止協定을 締結한 以來 同協定締結國은 14個國⁽¹⁷⁾에 이르고 있다.

(4) 投資情報支援制度

海外直接投資는 國內投資에 比하여 많은 危險과 巨額의 投資資金이 所要되므로 正確한 情報을 入手하는 것이 成功의 關鍵이다.

그러나 情報入手에는 많은 經費가 所要되고 情報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海外直接投資情報만을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機構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實情이다. 海外進出을 圖謀하고 있는 우리나라 企業이 情報을 入手하는 곳은 KOTRA, 海外公館, 金融機關 및 企業의 海外支社 等이며 韓國輸出銀行, 國際經濟研究院 等の 發刊資料에서 斷片的으로 情報을 蒐集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를 促進시키고 投資事業의 成功을 期하기 위하여 海外直接投資가 本格的으로 行하여 지고 있는 先進國에서와 같이 專門的인 海外直接投資情報센터의 設立은 必要하다고 본다. 또한 投資調查活動에 대한 調查費用의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I. 韓國의 海外投資實績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1959年 大韓重石鑛業(株)이 美國 뉴욕에 賃貸業 目的의 不動產을 取得한 것이 嚆矢이나 그 후 1967년까지는 國內 經濟力의 未成熟과 外換事情의 惡化로 外資導入 및 外國人直接投資 誘致에만 注力한 나머지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企業의 海外進出은 全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7) 二重課稅防止協定 締結國家: 日本, 泰國, 西獨, 英國, 덴마크, 벨지움, 美國, 캐나다, 네델란드,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핀란드.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質的인 海外直接投資는 1968年 韓國南方開發(株)이 인도네시아에 山林開發을 위한 林業投資를 行함으로써 始作되었으며, 1970년에는 運輸業과 貿易業이 進出하였고 1973년에 이르러 製造業投資가 이루어짐으로써 海外直接投資는 本格化되었다.

70年代에 들어와 海外直接投資는 件數나 金額에 있어서 繼續 增加하였는 바 이는 急激한 輸出伸張과 經濟의 國際化에 副應하여 母企業의 輸出窓口役割을 위해 貿易業體들의 現地法人設立이 急增하였기 때문이다.

1980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許可額 累計는 230,792千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 投資가 實際 이루어진 投資實績分도 135,341千달러에 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78年末 現在 美國의 海外直接投資殘額 1,681億달러 및 日本의 海外直接投資殘額 18,814百萬달러와 比較할 때 極히 微微한 實績이며 우리의 經濟規模를 勘案하더라도 海外直接投資는 아직 初期段階라 하겠다.

1. 海外直接投資의 構成現況과 特徵

(1) 年度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現況 및 特徵

1980년 12월 31일 現在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許可額 累計는 302件에 230,792千달러이며 이 중 投資實行分은 135,341千달러이었다.

海外直接投資가 始作된 1959년부터 製造業投資가 이루어진 1973년까지 間歇的으로 投資가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의 山林開發을 위한 林業投資와 調味料製造를 위한 製造業投資를 除外하면 投資效果를 期待할 만한 投資는 없었다. <表 1>에서 보듯이 1974년부터 製造業分野投資가 活潑하여짐에 따라 海外直接投資의 規模는 擴大되었고 또한 貿易業體들이 母企業의 輸出窓口 및 現地金融調達の 便宜를 위해 海外支社 대신 現地法人을 設立함으로써 投資件數는 急激히 增加하였다.

한편 最近의 資源民族主義(resources nationalism) 傾向의 深化는 賦存資源이 不足하고 原資材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 經濟에 資源의 安定的 供給을 위한 投資의 必要性을 提起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야 鑛業分野投資가 이루어졌으며 1979年 浦項綜合製鐵(株)의 美國 타노마(Tanoma)鑛山開發事業으로 資源開發을 위한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새로운 局面을 맞게 되었다.

海外直接投資의 業種別 構成比를 許可基準으로 살펴 보면, 첫째 投資金額面에서는 鑛業이 24.7%(57,020千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製造業 14.6%(33,592千달러), 林業 13.5%(31,138千달러), 貿易業 13.3%(30,745千달러), 建設業 13.2%(30,691千달러), 不動產取得 7.6%(17,442千달러), 水產業 4.1%(9,543千달러), 運輸保管業 0.9%(2,294千달러)의 順이

〈表 1〉 年度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許可額 推移 (單位：1,000달리)

業種別	年度別	1959~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總計
鑛業		—	—	—	—	—	(2) 590	(1) 53,948	(2) 2,482	(5) 57,020
林業		(4) 14,500	* 1,900	(1) 2,088	(1) 3,650	—	(1) 9,000	(1) 23,780	(Δ 1) Δ 23,780	(7) 31,138
水產業		(4) 892	—	(5) 282	(2) 90	(4) 5,033	(8) 1,397	(7) 2,816	(Δ 4) Δ 967	(26) 9,543
製造業		(3) 2,416	(3) 5,094	(1) 5,638	—	(3) 1,715	(8) 9,639	(2) 2,113	(7) 6,978	(27) 33,592
建設業		(5) 5,526	(1) 105	(1) 1,345	* Δ 4	(2) 2,028	(7) 9,634	(8) 7,079	(2) 4,978	(26) 30,691
運輸保管業		—	(1) 2	—	(2) 852	(1) 50	(2) 278	(3) 747	(3) 365	(12) 2,294
貿易業		(6) 1,376	(9) 578	(14) 923	(23) 6,908	(44) 7,941	(47) 5,447	(23) 4,149	(11) 3,423	(177) 30,745
其他		(5) 5,038	(2) 4,695	* 565	(1) 5,340	—	(2) 574	(5) 2,667	(Δ 1) Δ 552	(14) 18,327
小計		(27) 29,748	(16) 12,374	(22) 10,841	(29) 16,836	(54) 16,767	(77) 36,559	(50) 97,298	(19) Δ 7,073	(294) 213,350
不動產取得		(3) 1,867	* 33	(2) 281	—	—	(3) 8,150	(1) 5,114	(Δ 1) 1,997	(8) 17,442
總計		(30) 31,615	(16) 12,407	(24) 11,122	(29) 16,836	(54) 16,767	(80) 44,709	(51) 102,412	(18) Δ 5,076	(302) 230,792

資料：『海外投資現況』, 1980년 12월 31일 現在.

註：(1) ()內는 許可件數임.

(2) *는 既投資許可分에 對한 增額 또는 減少임.

(3) 請算 및 失效分은 除外함.

〈表 2〉 年度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實績 推移 (單位：1,000달리)

業種別	年度別	1959~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總計
鑛業		—	—	—	—	—	386	1,034	1,291	2,711 (3)
林業		8,465	3,058	2,638	26	2,416	4,448	3,263	70	24,384 (7)
水產業		893	—	222	90	5,027	1,363	2,616	Δ 1,079	9,132 (25)
製造業		24	11,145	1,525	—	Δ 23	6,203	409	1,870	21,193 (23)
建設業		2,604	305	1,346	172	Δ 1,061	11,052	2,679	4,540	21,637 (23)
運輸保管業		—	2	—	—	902	80	945	251	2,180 (11)
貿易業		1,153	506	667	6,040	5,062	7,836	2,826	1,938	26,028(168)
其他		2,919	6,658	542	1,825	1,500	2,574	1,971	41	18,030 (13)
小計		16,058	21,674	6,940	8,153	13,823	33,942	15,743	8,922	125,255(273)
不動產取得		1,627	33	281	240	—	7,158	986	Δ 239	10,086 (7)
總計		17,685	21,707	7,221	8,393	13,823	41,100	16,729	8,683	135,341(280)

資料：『海外投資現況』, 1980년 12월 31일 現在.

註：()內는 投資實行情件數임.

며 其他業種이 8.1%(18,327千달러)이다. 둘째 投資件數面에서는 貿易業이 58.6%(177件)로 가장 많고 다음이 製造業 8.9%(27件), 建設業과 水産業이 各各 8.6%(26件), 運輸保管業 4.0%(12件), 不動產取得 2.6%(8件), 林業 2.3%(7件), 鑛業 1.7%(5件)의 順이며 其他業種이 4.7%(14件)이다.

한편 <表 2>에서 보듯이 投資許可에 따른 投資實績面에서 보면 貿易業이 19.2%(26,028千달러)로 投資金額이 가장 많고 다음이 林業 18.0%(24,384千달러), 建設業 16.0%(21,637千달러), 製造業 15.6%(21,153千달러), 不動產取得 7.5%(10,086千달러), 水産業 6.7%(9,132千달러), 鑛業 2.0%(2,711千달러), 運輸保管業 1.6%(2,180千달러)의 順이고 其他業種이 13.4%(18,030千달러)이었다.

以上の 年度別·業種別 投資現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

①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輸出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바, 輸出伸張을 위하여 貿易業種에 대한 投資가 急増하였으며 특히 輸出商社들의 海外支社가 現地金融 및 現地販賣活動 強化를 위해 現地法人으로 轉換됨에 따라 投資金額面에서는 小規模이나 投資件數面에서는 繼續 增加하였다. 앞으로 輸出商社들이 現地에서의 營業活動制限을 克服하기 위하여 海外支社를 現地法人으로 轉換하는 것은 不可避할 것으로 이에 따라 貿易業種投資는 增加할 것이다(<表 3> 參照).

<表 3> 海外支社設置現況

地 域 別	支 社 數		海 外 投 資 件 數	
	(1979년 12월末)	現在)	(1980년 12월末)	現在)
東 南 亞		370		78
中 東		184		36
北 美		523		91
中 南 美		66		15
유 럽		191		49
아 프 리 카		29		6
大 洋 洲		25		5
合 計		1,388		280

② 歐美的 경우는 製造業部門이 海外直接投資의 中心業種인 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投資는 相對的으로 比重이 낮다.

③ 資源開發投資에 注力하고 있는 日本의 海外直接投資類型과도 달리 森林開發을 除外하고는 海外資源開發投資는 極히 不振한 바, 1978년에 鑛業部門投資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初期段階로 實績이 微微하며 投資效果는 相當期間이 經過되어야 期待할 수 있다.

④ 建設部門의 投資가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는데 이른바 勞動力輸出指向型 投資가 많다.

(2) 投資地域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現況 및 特徵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成을 보면 東南亞가 38.0%(51,444千달러)로 首位이며 다음이 北美 21.6%(29,264千달러), 아프리카 18.4%(24,967千달러), 中東 12.6%(17,096千달러)의 順으로 되어 있다(〈表 4〉 參照).

〈表 4〉 海外直接投資의 投資地域別 現況 (單位: 1,000달러)

業種別	地域別	東南亞	中 東	北 美	中南美	유 럽	아프리카	大洋洲	總 計	
鑛 業		420	—	—	2,291	—	—	—	2,711	
林 業		24,384	—	—	—	—	—	—	24,384	
水 産 業		90	—	248	3,442	40	5,192	120	9,132	
製 造 業		8,827	3,120	—	860	—	7,000	1,348	21,153	
建 設 業		3,103	11,330	6,192	—	—	1,012	—	21,637	
運 輸 保 管 業		219	947	910	—	104	—	—	2,180	
貿 易 業		3,284	798	8,390	169	3,465	9,872	50	26,028	
其 他		2,924	893	12,538	—	10	1,665	—	18,030	
小 計		43,241	17,096	28,278	6,762	3,619	24,741	1,518	125,255	
不 動 產 取 得		8,203	—	986	—	210	226	461	10,086	
總 計		51,444	17,096	29,264	6,762	3,829	24,967	1,979	135,341	

資料: 『海外投資現況』, 1980년 12월 31일 現在.

〈表 5〉 先·後進國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現況 (單位: 1,000달러)

國 別	業種別	製 造 業		貿 易 業		資 源 開 發 ⁽²⁾		其 他		總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 先 進 國 ⁽¹⁾											
美 國		—	—	71	8,055	5	248	12	20,739	88	29,042
캐 나 다		—	—	3	177	—	—	—	—	3	177
英 國		—	—	13	557	—	—	—	104	14	661
西 獨 逸		—	—	20	1,536	—	—	—	—	20	1,536
佛 蘭 西		—	—	4	749	—	—	—	—	4	749
벨 기 에		—	—	1	50	—	—	—	—	1	50
네 델 란 드		—	—	7	597	1	2,291	—	—	8	2,888
日 本		2	60	16	2,073	—	—	4	8,370	22	10,503
小 計		2	60	135	13,792	6	2,539	17	29,213	160	45,604
2. 後 進 國		21	21,093	33	12,236	29	33,688	37	22,720	120	89,737
總 計		23	21,153	168	26,028	35	36,227	54	51,933	280	135,341

資料: 『海外投資現況』, 1980년 12월 31일 現在.

註: (1) 先進國은 IFS의 先進國(industrial countries) 19個國中 우리나라가 投資한 國家임.

(2) 資源開發은 鑛業, 林業 및 水産業의 合計임.

先·後進國別로 區分하여 보면 東南亞를 中心으로 하는 對後進國投資가 43%를 占하고 있으며, 北美과 유럽을 中心으로 하는 對先進國 投資가 57%를 占하고 있다(〈表 5〉 參照). 投資地域別 業種別 現況에 따른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貿易業積, 建設業種은 先進國에 集中되어 있고, 製造業, 林業, 水産業은 後進國에 集中되어 있다. 이와 같이 貿易業種과 建設業種이 先進國에 偏重되어 있는 것은, 貿易業의 경우 우리나라 輸出이 北美 유럽 등의 先進國에 偏重되어 있어 現地販賣活動強化策으로 現地法人設立은 不可避하였으며, 建設業의 경우 우리나라의 低廉한 勞動力進出로 比較優位를 確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製造業 및 林業 水産業 등 資源開發投資가 後進國에 偏重되어 있는 것은, 製造業의 경우 우리나라의 資本과 技術이 比較優位에 있었기 때문이고, 林業과 水産業의 경우에는 先進地域보다 低開發地域이 進出에 容易하고 또한 原木輸入과 漁場確保라는 當面問題解決에 必要하였기 때문이다.

② 後進國投資의 多邊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中東地域과 中南美地域에 대한 投資가 不振한 바, 中東市場은 建設用役의 進出基盤強化를 위하여, 中南美市場은 새로운 市場開拓을 위하여 政策的 進出이 必要하다.

(3) 投資規模別 業種別 海外直接投資現況 및 特徵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投資規模別 業種別 構成比를 보면 投資件數에서는 10萬달러 以下가 55.0%(154件), 10萬달러 以上 50萬달러 以下가 26.8%(75件), 100萬달러 超過가 11.8%(33件), 50萬달러 以上 100萬달러 以下가 6.4%(18件)의 順이며, 投資金額으로는 100萬달러 超過가 76.3%(103,221千달러), 10萬달러 以上 50萬달러 以下가 10.3%(13,917千달러), 50萬달러 以上 100萬달러 以下가 8.7%(11,805千달러), 10萬달러 以下가 4.7%(6,398千달러)의 順으로 되어 있다(〈表 6〉 參照).

한편 業種別 1件當 投資金額은, 林業이 3,483千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不動產取得 1,441千달러, 建設業 941千달러, 製造業 920千달러, 鑛業 904千달러, 水産業 365千달러, 運輸 保管業 198千달러, 貿易業 155千달러의 順으로 되어 있다.

以上の 現況에서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① 投資規模가 零細性을 띠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海外直接投資의 件當 平均金額이 483千달러인데, 이는 林業 등의 件當 投資金額이 많기 때문에 平均金額이 높은 것에 不遇한 것으로, 投資規模面에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10萬달러 以下の 平均投資金額이 42千달러에 不遇하기 때문이다.

② 鑛業의 件當 投資金額이 적은 바, 이는 鑛業分野投資가 初期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6〉 海外直接投資의 投資規模別 現況

(單位 : 1,000달러)

業種別	金額別		10萬달러 以下		10萬~50萬 달		50萬~100萬 달		100萬달러 超過		總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鑛 業	1	80	1	340	—	—	1	2,291	3	2,711		
林 業	—	—	—	—	1	650	6	23,734	7	24,384		
水 産 業	20	729	3	903	—	—	2	7,500	25	9,132		
製 造 業	4	210	8	2,047	3	1,768	8	17,128	23	21,153		
建 設 業	3	104	8	1,363	4	3,001	8	17,169	23	21,637		
運 輸 保 管 業	5	258	4	572	2	1,350	—	—	11	2,180		
貿 易 業	115	4,726	45	7,271	6	3,550	2	10,481	168	26,028		
其 他	5	220	3	595	1	500	4	16,715	13	18,030		
小 計	153	6,327	72	13,091	17	10,819	31	95,018	273	125,255		
不 動 産 取 得	1	71	3	826	1	986	2	8,203	7	10,086		
總 計	154	6,398	75	13,917	18	11,805	33	103,221	280	135,341		

資料 : 『海外投資現況』, 1980년 12월 31일 現在.

註 : 投資未實行 22件 除外.

③ 貿易業의 件當 投資金額이 155千달러로 外國換管理規程上 海外支店의 營業基金 30萬 달러와 比較할 때 切半밖에 되지 않는 바, 이는 貿易業投資의 目的이 現地金融利用과 輸出 窓口로의 活用に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投資에 따른 經營支配現況 및 特徵

投資實行한 海外直接投資 중 우리나라가 經營權을 掌握하고 있는 것이 79.6%(223件), 現地側이 掌握하고 있는 것이 20.4%(57件)이다.

여기에서 經營權 支配與否는 投資比率에 따른 것으로 投資比率이 50% 以上인 경우 經營 支配를 하는 것으로 보았고, 投資比率이 50% 以下라도 우리나라에 事實上 經營支配權이 있는 경우 例를 들면 投資相對方이 經營權을 委任한 경우나, 投資相對方의 經營能力不足으로 우리나라가 實質的 經營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理事會를 構成한 경우에는 經營支配를 하는 것으로 看做하였다.

이처럼 海外直接投資法人의 經營權이 우리나라에 集中되어 있는 것은, 外國換管理規程上 海外直接投資時 우리 側의 投資比率은 原則적으로 50% 以上이 되도록 要求하고 있고, 合作投資보다 現地法人設立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投資事業의 目的이 經營支配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投資比率은 海外直接投資의 目的達成을 期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決定하여야 한다.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 및 進出類型

(1) 投資動機

個別企業의 立場에서 海外投資의 動機는 戰略的 動機, 行動的 動機, 經濟的 動機, 財務的 動機를 들 수 있는 바, 戰略的 側面에서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企業의 投資動機는 주로 海外市場擴大와 企業經營成長을 위한 것이며, 長期的인 資源確保에는 微溫的인 態度를 보였었다(〈表 7〉參照). 그러나 最近에 와서 企業의 投資動機는 海外市場擴大와 資源確保의 兩面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바, 韓國南方開發(株)의 인도네시아 石油開發合作投資는 資源開發投資의 새로운 展望을 提示하고 있다.

〈表 7〉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

投 資 動 機	應 答 數	構成比(%)
原資材의 安定供給 및 活用을 위해서	8	11.1
國內市場의 沈滯를 克服하기 위해서	6	8.3
海外市場의 底邊擴大를 위해서	23	31.9
經營成長을 꾀하기 위해서	18	25.0
關稅障壁을 克服하기 위해서	3	4.2
競爭關係에 있는 他企業이 進出하므로	4	5.6
其 他	10	13.9
合 計	72	100.0

資料：貿易協會,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과 對應策』, 1978년 11월, p. 45.

이와 같은 投資動機 傾向은 政府의 輸出主導型 成長政策에 便乘하여 急成長한 貿易商社들이 世界各國의 保護貿易主義에 따른 輸入規制를 回避하고 現地國에서의 營業活動基盤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 貿易業營爲目的의 現地法人設立을 選好하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企業들이 海外資源開發에 微溫的인 것은 開發輸入의 다음과 같은 特殊性에 基因한 것으로 ① 資源의 開發輸入을 위한 投資는 探查·試錐 및 生産에 따른 期間이 길고, ② 開發輸入은 資源保有國의 政治的, 經濟的 環境變化에 따른 開發制約可能性과 開發에 따른 技術的 問題點 等 諸般危險이 內在되어 있고, ③ 賦存資源의 探查와 生産設備 設立에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고, ④ 事業의 國際性으로 因한 現地經營上의 諸般 問題點에 直面한다.

이와 같이 資源開發投資에는 諸般問題點이 惹起되는 바, 이러한 問題點을 民間企業이 獨自的으로 解決하기 어려우므로 企業들이 資源開發投資를 忌避하고 있다.

(2) 進出類型

海外投資는 投資效果를 基準으로 하면, 貿易指向型과 市場指向型으로, 投資動機를 基準

으로 하면, 市場確保型, 資源確保型, 勞動力確保型, 經濟協力型, 多國籍企業型으로 區分되는 바,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法人의 進出類型을 事業目的에 따라 區分하여 보면 營業活動中인 280個 業體(22個 業體는 投資未實行) 중, 35個業體(鑛業 3, 林業 7, 水產業 25)가 資源確保를 위해, 89個業體(製造業 23, 建設業 23, 運輸保管業 11, 貿易業 32)가 市場開拓 및 確保를 위하여 投資하였으며, 其他 156個業體는 現地法人을 輸出窓口로 利用하기 위해 또는 不動產取得을 위해 投資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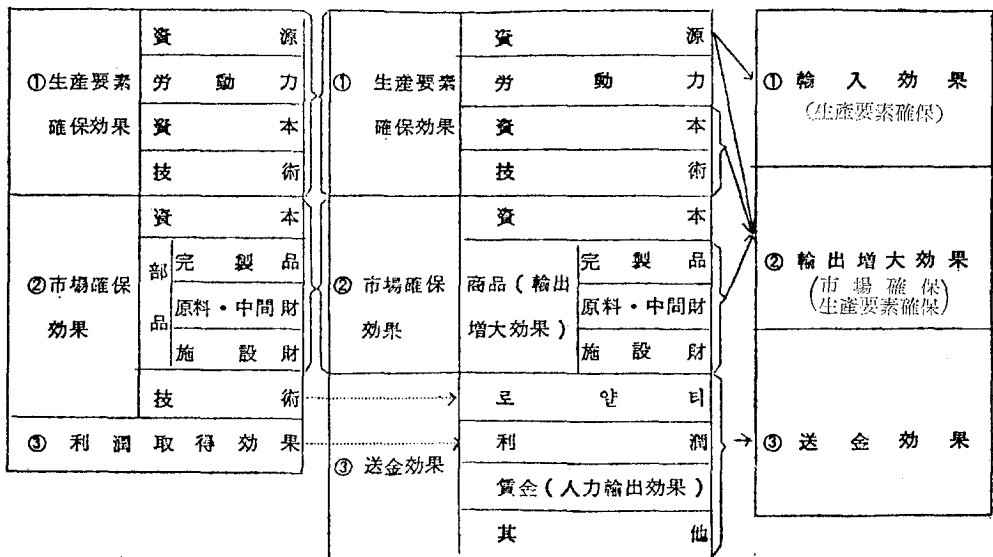
이와 같이 輸出擴大를 위한 海外投資가 많은 것은 資源不足과 加工貿易이 主인 우리나라의 輸出類型에 비추어 볼 때 必然的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現象은 投資效果에서도 나타나 海外投資의 國際收支改善效果가 相當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海外直接投資의 效果

(1) 海外直接投資效果 現況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效果를 輸入效果, 輸出效果, 送金效果 및 顧備效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參照).

우리나라의 1980年末 現在 海外直接投資實績은 135,341千달러인데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年末까지의 同投資效果는 輸出效果가 5,044,034千달러, 輸入效果가 1,718,868千달러, 國內送金效果가 577,768千달러에 達하였으며 韓國人 就業人員도 15,939名에 이르렀다.



1. 企業의 立場

2. 一般의 國民經濟的 立場

3. 韓國의 國民經濟的 立場

〈그림 1〉 海外直接投資의 主體別 效果

〈表 8〉 海外直接投資의 效果

(單位 : 1,000달러)

業種別	區分	投資金額 (A)	外貨入金額 (B)	稼得率 (B/A, %)	輸出實績	輸入實績	就業人員 (名)
鑛	機	2,711	38	1.5	—	—	13
林	業	24,384	32,610	133.7	3,148	173,564	236
水	產	9,132	18,553	203.2	7,318	5,914	879
製	業	21,153	3,252	15.4	52,932	6,044	297
建	設	21,637	479,157	2,214.5	60,438	2,393	12,538
運	保	2,180	37,579	1,723.8	92	—	1,143
貿	易	26,028	2,333	8.9	4,917,145	1,522,953	685
其	他	18,030	4,019	22.3	2,961	—	106
小	計	125,255	577,541	461.1*	5,044,034	1,718,868	15,897
不	動	10,086	227	2.3	—	—	42
總	計	135,341	577,768	426.9*	5,044,034	1,718,868	15,939

資料 : 『海外投資現況』, 80년 12월 31일 現在.

註 : * 平均稼得率.

以上の 現況에서 韓國의 海外直接投資效果는 輸出增大效果가 가장 크고 送金效果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가 輸出指向型 投資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海外直接投資效果를 業種別로 보면, 貿易業은 輸出增大效果가 4,917,145千달러로 全輸出效果의 97.5%, 輸入效果는 1,522,953千달러로 全輸入效果의 88.6%를 占하고 있으나, 外貨送金效果와 雇傭效果는 他業種보다 낮다. 이는 貿易業에서의 海外直接投資는 輸出促進을 위한 現地販賣活動과 國內에 原資材供給을 圓滑히 하기 위한 購買活動이 主目的이기 때문이다.

建設業은 모든 業種 중에서 送金效果가 479,157千달러(全送金額의 82.9%)로 가장 크고 또한 雇傭效果도 12,538名(全就業人員의 78.6%)이 就業하여 가장 크다. 이는 建設業의 海外直接投資가 人力輸出型이며 또한 國內에서 機資材를 많이 調達한 데에 基因한 것이다.

林業은 輸入效果가 173,564千달러에, 送金效果가 32,610千달러로 國內에 原木의 安定的 供給과 外貨獲得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볼 수 있다.

以上の 投資效果는 앞으로 海外直接投資가 増加함에 따라 더욱 擴大될 것이다.

특히 建設業은 1973年 對中東建設業輸出이 始作된 以來 最近까지 工事受注額이 370億달러를 넘어서는 急伸張을 하였으나, 中東建設輸出의 70% 以上을 占하는 사우디政府가 自國 産業保護政策으로 外國業體의 單獨入札參加를 制限하고 있어 建設受注基盤確保를 위한 合作投資는 不可避할 것으로 建設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繼續 増加할 것이며, 이로 因한 投資

效果는 클 것이다.

水産業은 外貨送金效果가 18,553千달러로 稼得率이 203.2%에 達해 相當한 投資效果를 보이고 있는 바, 同業種의 投資는 世界各國의 200해리 經濟水域宣布에 따른 漁場確保가 主目的이므로 그 效果는 外觀上의 統計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製造業을 비롯한 餘他業種은 投資效果가 不振한 바, 이에 대한 效果分析은 海外直接投資가 初期段階임을 勘案하여 投資活動이 定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2) 海外直接投資의 國際收支效果

海外直接投資가 國際收支에 미친 效果를 보면 <表 9>에서 보듯이 1980年 現在 貿易關係收支에 3,325,166千달러, 資本 및 貿易外關係收支에 466,304千달러의 效果를 나타내었다. 이는 海外直接投資가 短期的으로 볼 때에는 國際收支에 陰의 效果를 가져오나, 長期的으로 보면 國際收支에 陽의 效果를 가져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表 9> 海外直接投資의 國際收支效果(1980. 12. 31 現在) (單位: 1,000달러)

區 分	年度別	1959~76	1977	1978	1979	1980	總 計
I. 受 取							
1. 誘發輸出		218,737	418,128	958,490	1,457,091	1,991,588	5,044,034
2. 投資收益 ⁽¹⁾		31,375	53,379	114,205	132,680	246,205	577,767
3. 債權(元利金)回收 ⁽²⁾		1,459	4,334	2,839	3,738	11,508	23,878
II. 支 拂							
4. 逆 輸 出		120,646	106,740	319,153	806,007	366,322	1,718,868
5. 資本流出		55,006	13,823	41,100	16,729	8,683	135,341
III. 收 支							
6. 貿易關係收支 (1+4)		98,091	311,388	639,337	651,084	1,625,266	3,325,166
7. 資本, 貿易外關係收 支(2+3+5)		△22,171	43,891	75,944	119,690	248,953	466,304
IV. 總 計(6+7)		75,920	355,279	715,281	770,774	1,874,219	3,791,470

註: (1) 國內送金한 利益金+貸付金利子+國內送金한 賃金+其他.

(2) 貸付金中 償還額.

IV. 結 言

以上에서 1980年末까지 韓國의 海外直接投資實績과 現在 實施되고 있는 海外投資制度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는 그 간 輸出擴大, 海外建設事業의 活潑化 등으로 國際收支上의 與件이 好轉된 에 따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여 왔으며, 投資促進을 위한 諸般支援制度를 擴充하였다. 그러나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의 現實에서 볼 때 海外市場의 底邊擴

大의 所要資源의 長期・安定的 供給을 위해서는 海外投資를 促進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初期段階를 벗어난 海外投資의 長期方向은 比較優位가 강한 產業部門은 輸出産業으로, 比較優位가 弱한 產業部門은 海外投資産業으로 特化시킴으로서 國際分業體制上 比較優位構造를 高度化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制度的 支援策이 보다 擴充・整備되어야 할 것이지만 海外投資를 하는 個別企業에서도 長期的 眼目으로 經營戰略을 樹立하는 姿勢가 必要하다.